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96
----------	-------

발의연월일 : 2010. 12. 27.

발 의 자 : 김유정 · 강창일 · 김상희
김영진 · 김재운 · 김효석
변웅전 · 변재일 · 백원우
손범규 · 신낙균 · 안민석
유성엽 · 이낙연 · 조영택
최인기 · 홍재형 의원
(17인)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에 의해 일어나는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등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수는 2007년 2,136명에서 2009년 2,93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가해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불기소나 불처분으로 처벌에서 제외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재범예방효과가 큰 수강명령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임.

따라서 성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모든 가해아동·청소년에게는 수강명령을 받도록 하고,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로 하여금 가해아동·청소년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하여 가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유혹에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판사는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명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 나. 검사는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소년법」”을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명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가해아동·청소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가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생략)</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29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① (생략)</p> <p>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p> <p>③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28조(가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p> <p>-----</p> <p>-----</p> <p>-----</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29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제28조제1항-----</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명하여야 한다.</u></p> <p>⑤ <u>검사는 가해아동·청소년에</u></p>

<신 설>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